

소득세(사업소득세) 납세의무

1. 소득세 제도 개요

※ 소득세 계산구조

$$\begin{aligned} & \text{총수입금액} \\ & - \text{필요경비} \\ & = \text{소득금액} \\ & - \text{소득공제} \\ & = \text{과세표준} \\ & \times \text{세율} \\ & = \text{산출세액} \\ & - \text{세액감면 및 공제} \\ & = \text{결정세액} \\ & + \text{가산세} \\ & = \text{총결정세액} \\ & - \text{기납부세액} \\ & = \text{차감납부할 세액} \end{aligned}$$

가. 의의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분류과세 소득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소득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나. 소득세의 규정 방식

(1) 소득의 규정 방식

소득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다.

(2) 포괄주의

포괄주의는 소득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특별히 예외로 취급하지 않는 한 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도록 소득을 규정해 놓은 방식을 말하고, 법인소득에 대하여 이원칙을 취하고 있다

(3) 열거주의

열거주의란 세법에 과세 대상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4) 유형별 포괄주의

다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는 한편 열거주의 방식이 갖는 단점을 일정 정도 보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다. 소득세 과세단위

(1) 개인단위 과세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를 과세단위라 하는데,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소득세의 과세단위가 된다.

한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등을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2)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가) 일반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① 공동사업의 개념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사업자별 소득금액 계산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여 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도 없다.

따라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분배한다.

기타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공제·감면 등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장부 비치 및 기록의무도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적용한다.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거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단체의 구성원 중 일부에 게만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만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고,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단체를 1거주자 등으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이 있는 경우

익명조합이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동사업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으로 구성된다.

한편,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데,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출자지분이 없어도 출자 당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만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방법으로 영업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라) 납세의무의 범위

원칙적으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

정인 소득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대법원1995.4.11. 선고 94누13152 판결).

예외적으로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3) 개인단위 과세와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가) 개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단위 과세로 소득을 얻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구성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생계를 같이하는 자만 해당)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를 공동사업 합산과세라고 한다.

(나) 특수관계의 범위

일정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가 있다.

(다)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

㉠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㉞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라)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 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 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라. 소득세 과세방법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하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소득원천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 등이 있다.

(1) 종합과세

①개념

종합과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발생원천·종류를 불문하고 그 과세기간에 획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단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분류과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법이 정하는 기간 내(과세기간)에 각자에게 귀속된 일체의 소득을 종합하여 그 소득금액을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장점

종합과세는 개인의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분류과세에 비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부담 실현에 적합하여 각국의 소득세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다.

③단점

종합과세에는 조세의 회피 심리와 소득의 포착, 계산의 어려움,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과세누락 소지가 있는 등 단점도 있다.

④내용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한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의 구분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며, 금전의 대여행위가 비사업적인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사업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또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2)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 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특정 소득 지급시마다 별도

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이다.

한편,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정한 기타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다.

(3) 분류과세

분류과세란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분류소득 종류별로 세율구조가 다르며, 종합과세방법에 비하여 부과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영도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마. 소득의 귀속

(1)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이다.

(2) 권리의무 확정주의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즉,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11105 판결).

한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

의 없는 일반 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 자금의 확보 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다만 권리확정주의는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의 실현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으로,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가령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두1953 판결).

2. 사업소득세

가. 사업소득 의의

(1)사업의 의미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2)사업소득의 개념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즉, 사업소득은 자영업자나 고용주의 지위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경영에 대한 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3)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4)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구분

동일한 사업이라도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나. 사업소득의 세부 범위

사업소득의 범위와 구분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통계청에 의하면 농작물을 재배하여 단순 가공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면 작물재배업, 1차가공하는 데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서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가 신축·분양사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한편,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 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는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도매업은 구입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소매는 구입한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과의 구분이 문제되는바 일반적으로 어떤 이자가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즉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영리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금전으로 대여하여야 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당해 대여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즉,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본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업

부동산업이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일괄도급건설),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을 말한다.

한편 부동산 공급업이란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를 경우를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또한 주거용 건물의 구입 재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한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는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용 시설로서 그 용도상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질의회신, 법령해석소득-2469, 2018.2.2).

㉔ 건물 건설업

건설업이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의 자영건설 및 일괄도급건설에 의한 주택개발 및 공급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이 이에 해당한다.

㉕ 부동산 임대업

개인이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속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지 아니한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지역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또한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그 밖에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전월세신고제(2021.6.1.부터 시행)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 또는 매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전·월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은 제외됨.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이에 해당한다.

(18) 일정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일정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한다.

(19)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일정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다. 비과세 사업소득

(1) 작물재배업 등 사업소득

㉠ 벼, 보리, 감자, 녹두, 콩 등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무조건 비과세

㉡ 기타 작물재배업(채소작물, 화훼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업, 과실작물, 음식용 및 향신용 작물, 콩나물 재배, 인삼재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

※ 농산물을 생산한 사업자가 그 농작물을 기존에 영위하는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 생산외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서면-1206, 2004.8.30.).

(2)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제조, 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등으로 일정한 규모의 농가부업소득(금액제한 없음)

㉡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어로어업소득,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으로서 연 5,000만원 이하인 소득

(3) 일정한 입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조림기간이 5년 이상된 임지 입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간 600만 원 이하인 경우.

(4) 일정한 주택임대소득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주택수 계산

①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②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같으면 합의하여 그들 즉 1명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로 계산한다.

③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임대주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이 다르다.

①보유주택이 1주택이면 국외주택, 고가주택인 경우 월세만 과세하고,

②보유주택이 2주택이면 모두 과세하되, 월세만 과세한다.

③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이면 모두 과세하되, 원칙적으로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고 월세는 전부 과세한다.

한편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한다.

3. 총수입금액의 계산

가. 의의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 소비대차, 자본에의 출자, 근로의 제공, 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해당과세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사업활동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와 함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본요소를 이룬다.

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

- ㉠ 매출액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을 판매한 금액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은 연체료
- ㉣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국고보조금 제외)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 ㉤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세법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그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

금이 아닌 것을 말함

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㉕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금액

㉖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

㉗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재고자산 양도

㉘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㉙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

㉚ 재고자산 또는 입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㉛ 복식부기의무자가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부동산을 제외한 차량(업무용 승용차)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건설기계 등이다. 건설기계는 18.1.1이후 취득분만 해당된다.

㉜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㉝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

㉞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인 임대료, 간주임대료(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경우),

다만, 건물의 유지비나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청소비·난방비.

다만,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의 임대료는 고가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과세대상이다.(기준시가 12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이다).

한편,주택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

- ㉠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
- ㉡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
-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
- ㉤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 개별소비세·주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주세
- ㉧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한 가액
- ㉨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의 평가차익
- ㉩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가산금 및 그 밖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4. 필요경비의 계산

가. 의의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지출증빙에 의한 장부기장내용 중 법이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을 말한다.

즉,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비용의 지출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익과 그 수익의 발생에 들어간 비용은 동일한 회계연도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필요경비의 산정 방법

(1)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장된 제비용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가산한 금액,

(2)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 금액,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을 말한다.

①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며,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가 있다.

②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1) 매출원가 등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

※취득세, 등록·면허세, 원료 등의 관련 관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상품 등의 재해로 인한 멸실시 그 원가

㉣ 자산의 평가 차손

(2) 인건비 등

㉠ 종업원 급여. 다만, 사업주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직원회식비 등 복리후생비

㉣ 종업원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정요건의 학자금

(3) 지급이자비용 등

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채무에 대한 이자 비록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10.13.선고 2011두15466 판결).

※공동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당해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기획재정부 소득-149, 2011. 4. 22)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의 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지 않고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즉,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임대건물을 신축한 경우 준공시 까지의 지급이자도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㉕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㉖ 사계약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세하는 지체상금

㉗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4)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 등

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㉙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㉚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

- ㉔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㉕ 사업과 관련 있는 증권거래세, 인지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등

(5) 사업용 자산의 관리와 유지비 등

- ㉖ 사업용 자산의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㉗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중에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운행기록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한다.
※2021.1.1. 이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등은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미가입시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만 인정)
- 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6) 접대비와 기부금 등

- ㉙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접대비로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
다만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와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접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㉚ 사업자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㉛ 일정한 범위 내의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 수첩 등 이와 유사한 물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경우 그 비용

(7) 대손금

대손금은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금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8)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자산별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한도 내의 금액.

(9) 공과금 등

-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 공과금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공회의소회비, 사용자부담 국민연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대한적십자회비

(10) 부담금 등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용자보험료 또는 부담금
-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사업자 자신의 보험료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①복식부기의무자가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일정한 업무용 사용금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년 귀속부터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만 관련 비용의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미가입시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즉, 2대 이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 사용금액이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 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12)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

-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한 무료진료가액
-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운영비
-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 광물 탐사 관련 비용
-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 광고선전비
- ㉨ 업무와 관련하여 경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한 손해배상금

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1) 일정한 이자비용

- ㉠ 지급이자 중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⑥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초과인출금 이자): 사업장별이 아닌 인별로 계산한다.

즉, 사업용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와 운영자금 전용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⑧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 부담하는 공과금 등

① 벌금·과료와 과태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산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④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⑤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⑥ 세법에 따라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⑦ 손해배상금으로 업무와 관련 없거나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고의 또는 이종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

(3) 세금 등

① 반출 후 미판매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선급비용

(5) 복식기장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고정자산 처분손실

(6)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중에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은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 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로 볼 수 없다.(대법우녀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6. 사업소득금액의 귀속

가. 상품 또는 제품 등의 판매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되고, 상품 등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이 된다.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의 경우는 당

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이다.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의 판매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 다만 장부 할부 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

나. 도급계약의 경우

(1)용역제공 완료일

도급계약의 경우에 병의 치료·물건의 운송 등 무형의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급인의 소유물을 수선하는 경우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는 주된 재료를 사용하여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물건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용역)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그리고 제작한 물건이 기계장치와 같은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다만,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가능)이 된다.

(2)진행기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착수일로 부터 인도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의한 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귀속된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원칙적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다만,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된다. 따라서 장기예약매출인 경우에도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인적용역의 제공

1년 미만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할 날 중 빠른 날.

1년 초과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과세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라. 금융보험업(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마.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

바.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아. 기타

수용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청산한 날, 보험차익은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다.

※ 결손금 공제와 이월결손금 공제

가. 사업소득의 결손금

결손금이란 총수입금액 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서대로 공제한다.

나.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

2014.1.1. 이후 발생하는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다. 결손금 소급 공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반드시 결손금 소득공제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이월결손금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한다.(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 하거나, 장부

가 기장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8. 소득공제

가. 의의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세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측면과 각자의 특수사정, 공익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 범위내의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공제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인적공제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기타 소득공제가 있다.

나.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즉, 인적상황에 따라 세금부담에 차등을 두어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

다. 추가공제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준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등이 있다.

라. 물적공제

물적공제는 납세자가 지출한 사회보장비용에 대하여 세제면에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